

승의여자대학교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0.02.13
위원정수	: 11명

1. 일 시 : 2020.02.25.(화) 14:00~15:00
2. 장 소 : 205호 회의실
3. 참석위원 : 총 6명 위 원 : 이애랑, 최민경, 정길채, 최동춘, 박소연, 강명수
4. 안 건 1) 2020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 의장은 의원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 의장은 간사에게 전회차 회의록을 낭독하라 말하며 간사는 1월 21일 진행된 전회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의장은 금일 안건인 2020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해 주관부서장인 교무처장에게 사전 설명을 요청하고 교무처장은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교무처장은 금일 학칙개정의 주요 내용 3가지에 대해 상세 설명하다. 먼저 2020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및 정원 조정 개정으로 학칙 제5조(설치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2020학년도 3월 1일자로 아동미술보육학과가 아동보육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편제정원 3,375명(주간 1,148명, 야간 400명)이 변경되는 개정 사항을 설명하다.
- 교무처장은 이어서 학칙 제11조(휴업일)과 관련해서 정기휴업일의 범위에 근로자의 날을 휴업일로 지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마지막으로 제22조(재입학) 3항과 관련하여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유사과로 입학할 수 있

고,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학제가 변경된 학과 출신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따른다는 내용을 개정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제22조(재입학) 4항으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재입학 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다. 최근 들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재입학 문의, 과거 졸업생들의 재입학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학칙 세부 사항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다.

- 의장은 교무처장의 설명을 잘 들었다며 회람된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며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 정길채 의원은 제11조 휴업일과 관련하여 국정공휴일은 일요일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하다.
- 의장은 제 22조 재입학 3항에 신설 및 개정으로 제시된 내용이 개정이 되면 현행 신설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다.
- 의장은 금일 안건으로 2020학년도 1학기 학칙개정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동의 재청 여부를 묻자 정길채 의원이 동의, 최민경 의원이 재청, 다른 모든 의원이 찬성하다.
- 부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02. 25

의 장	이	애	랑 (인)	
부의장	최	민	경 (인)	
의 원	정	길	채 (인)	
의 원	최	동	춘 (인)	
의 원	박	소	연 (인)	
의 원	강	명	수 (인)	